

결 정

2018 - 1034 신문윤리강령 위반

1.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
2.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

주 문

신아일보 2018년 1월 19일자 2면 「최종구 “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두 가지 방안 검토”」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, 문화일보 1월 23일자 27면 「“정현, 앞으로 더 무서워질 것…호주 오픈 우승후보 4순위”」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1. 위 2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.

(신아일보)=



<<http://www.shina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33795>>

(문화일보)=



<<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8012301032721302001>>

2.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신아일보는 연합뉴스가 2018년 1월 18일 11시 19분 전송한 「최종구 “가상화폐 거래 해외이전,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” 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게재했다.

문화일보는 1월 23일 오전 7시 36분 로이터가 송고한 「[오스트레일리아오픈]-정현, “보고 있나”」 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실었다.

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제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 용 담
위원	정 승 호	정 승 호
	장 명 국	장 명 국
	이 동 현	이 동 현
	장 인 철	장 인 철
	김 규 식	김 규 식
	강 희	강 희
	하 윤 수	하 윤 수
	김 영 모	김 영 모
	박 현 갑	박 현 갑
	박 미 경	박 미 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제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.